

[별표 1] <개정 2015.10.19.>

신장 ·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(제10조제1항 관련)

단위: BMI(체중kg/신장m²)

신장(cm) \ 등급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
140 이하						체중과 관계없이 6급
140 초과 ~ 146 미만					체중과 관계없이 5급	
146 이상 ~ 159 미만				체중과 관계없이 4급		
159 이상 ~ 161 미만			17 ~ 32.9	17 미만, 33 이상		
161 이상 ~ 204 미만	20 ~ 24.9	18.5 ~ 19.9 25 ~ 29.9	17 ~ 18.4 30 ~ 32.9	17 미만, 33 이상		
204 이상				체중과 관계없이 4급		

비고: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.